



제438회국회(임시회)
제 2 차 정 무 위 원 회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의무 예외 제한 〉
■ 이정문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18321호)

2026. 8.

정 무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곽현준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3

I. 제안경위

1. 제 안 자 : 이정문의원 등 12인
2. 제 안 일 : 2026. 4. 14.
3. 회 부 일 : 2026. 4. 15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「상법」 개정으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. 이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 외의 목적으로 장기간 보유하거나 지배력 강화 또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주주환원 및 주주가치 제고라는 제도 본래의 취지를 실현하려는 것입니다.

한편, 개정 「상법」은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자기주식보유·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,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예외 사유에는 신기술의 도입,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그 사유가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.

그런데 개정 「상법」 시행 이후 다수의 상장회사가 정기주주총회에서 위 예외사유를 근거로 정관을 변경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며,

구체적인 활용 계획이 없음에도 선제적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도 이어지고 있음. 특히 그 내용이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무구조의 개선에 그치지 않고 전략적 제휴, 사업구조 개편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어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되고, 「상법」 개정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.

이에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해당 예외사유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, 주주환원 및 주주가치 제고라는 상법 개정 입법취지를 충실히 구현하고자 하려는 것임(안 제165조의3제5항 신설).

Ⅲ. 검토의견

- 개정안은 주권상장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「상법」 제341조의4제2항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, 경영상 목적을 이유로 자기주식 소각의무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(안 제165조의3제5항 신설).

현행	개정안
제165조의3(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특례) ① ~ ④ (생략) <u><신설></u>	제165조의3(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특례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<u>주권상장법인이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하여는 「상법」 제341조의4제2항(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</u>

- 자기주식이란 회사가 자신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주식으로, 현행법과 「상법」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에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고 있음.¹⁾²⁾

1) 현행 「자본시장법」상 자기주식 취득은 1994년 구 「증권거래법」 개정 시 주권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활용하여 다양한 경영전략을 수립·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허용된 것임. 한편, 「상법」은 종전에는 회사의 합병 등 특정 목적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주식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었으나, 2011년 법률 개정으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2) 「상법」

제341조(자기주식의 취득)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. 다만,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.

1. 거래소에서 시세(時勢)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
2.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

제462조(이익의 배당)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

□ 최근 기업들이 회사의 자산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주주환원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,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또는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편법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으며, 이에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내 소각을 의무화하고,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보유·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의 「상법」 개정안이 2026년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같은 해 3월부터 시행되었음.³⁾

- 개정 「상법」은 ① 회사는 원칙적으로 자기주식 취득 후 1년 내 (법 시행 전 취득한 기존 자기주식은 1년 6개월 내) 소각을 의무화하고, ② 임직원 보상이나 경영상 목적 등 자기주식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대하여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

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.

1. 자본금의 액
2.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
3.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
4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

제165조의3(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특례) ① 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.

1. 「상법」 제341조제1항에 따른 방법
2. 신탁계약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신탁업자로부터 신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때 반환 받는 방법(신탁업자가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을 「상법」 제341조제1항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)

② 제1항의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의 총액은 「상법」 제462조제1항에 따른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이내이어야 한다.

③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의 방법 또는 「상법」 제3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결의로써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.

④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(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)하거나 이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(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)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·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.

- 3) 법무부 보도자료, “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「상법」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- 자기주식의 편법적 활용을 방지하고, 소각을 통해 주주환원 도모 -”, 2026. 2. 25.

받아 예외적으로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음.⁴⁾

□ 그런데, 개정 「상법」 시행 이후 일부 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의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없음에도 경영상 목적에 따른 예외를 인정받기 위하여 정관을 미리 변경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○ 2026년 자기주식 보유·처분 목적으로 정관을 변경한 회사는 2,478개 상장회사 중 462개사(18.6%)인 것으로 파악됨.⁵⁾

□ 이에 개정안은 주권상장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「상법」 제341조의4제2항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, 상장법인에

4) 「상법」

제341조의4(자기주식의 소각의무 등) ①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.

1. 회사가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
2. 회사가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
3. 회사가 「근로복지기본법」에 따라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
4. 회사가 제360조의2제2항, 제360조의15제2항, 제523조제3호 등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
5. 회사가 신기술의 도입,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관에 그 사유를 규정한 경우

③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.

④ 제2항에 따른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
1.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목적
2. 보유 또는 처분 대상이 되는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, 취득방법
3. 보유 개시시점 및 예정된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
 - 가.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, 취득방법
 - 나.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의 종류와 수
 - 다. 발행주식총수 대비 자기주식 비율의 변화

4. 예정된 보유 기간

5. 예정된 처분 시기

5)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보도자료, “12월 결산 상장사 2026년 정기총회 운영 현황 및 주요 특징”, 2026. 4. 14.

대해서는 경영상 목적을 이유로 한 자기주식 소각의무의 예외를 인정하지 아니하려는 것임.

- 이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, 자기주식이 장기간 보유되거나 경영권 방어 또는 지배력 강화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주주환원 및 주주가치 제고라는 개정 「상법」의 취지를 보다 충실히 구현하려는 취지로 보임.

□ 다만,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.

- 첫째, 「상법」이 경영상 목적에 따른 자기주식 보유·처분을 허용하는 소각의무의 예외를 둔 것은 기업이 신기술의 도입,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기주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, 이러한 자기주식 보유·처분의 필요성은 비상장법인뿐만 아니라 상장법인의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, 상장법인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.
- 둘째,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미국,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회사가 자기주식을 경영상 긴급한 유동성 및 운영자금 확보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, 개정안이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.

□ 참고로,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음.

- 금융위원회는 ① 개정 「상법」이 최근 시행된 만큼 실제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보유·처분 운영 추이⁶⁾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, ② 판례⁷⁾상 경영상 목적은 부득이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되고 경영권 방어 목적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장회사가 경영상 목적을 이유로 자기주식을 임의로 활용하기는 어려우며, ③ 미국, 일본 등 해외 주요국과의 국제적 정합성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.
-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개정 「상법」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, 주주총회의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승인 등 자기주식의 남용적 보유·처분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를 이미 마련하고 있고, 경영상 목적에 따른 자기주식 처분은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, 이를 제한할 경우 기업의 재무위기 대응 능력과 자본시장의 매력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.

6) 경영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보유·처분하기 위해서는 정관 변경 후 주주총회 승인, 이사회 결의 등의 절차를 추가로 거쳐야 함.

7) 신주의 제3자 배정에서 경영상 목적을 인정한 판례(자료: 금융위원회)

(1) 시설투자 및 경영정상화 계획 수행을 위한 외부자금 조달(부산고등법원 2013나2139 판결)
(2) 외국인 투자 유치(서울고등법원 2007나65674 판결)
(3) 친환경 신사업 협력 및 안정적 원료조달(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52067 판결)

문 의 처
02)6788-5111